오산시의회 공고 제2023-37호

#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오산시의회의장

#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도현 의원 발의)

### 1. 제안이유

○ 오산시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고,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와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일원화하며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가.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3자녀"에서 "2자녀"로 수정함 (안 제2조)

나.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일원화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함 (부칙 안 제2조)

# 3. 조례안 : 붙임

###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9월 4일까지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

○ 제출서식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오산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입법예고>공지)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31, ·팩 스 : 031)3036-8953

· 전자메일 : blue6017@korea.kr

오산시 조례 제 호

####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2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를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로 한다.

- ②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항제1호 중"「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제2조제4호"를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로 한다.
- ③ 「오산시 목공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
- 제11조제1항제2호사목 중"「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를"「오산시 オ출산 대책 기본 조례」"로 한다.
  - ④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제4호 중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4호"를

-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로 한다.
  - ⑤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4호"를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로 한다.

- ⑥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다자녀가정"이란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서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자녀가정"이란 <u>셋째</u> 이상	2 둘째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